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651
----------	-------

발의연월일 : 2023. 9. 22.

발 의 자 : 허은아 · 박성중 · 백종현
권성동 · 최영희 · 하태경
김 웅 · 서일준 · 김영식
정동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해당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이므로 해당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6항 본문 중 “제2항부터”를 “제1항제6호 및 제2항부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4조(과태료) ① ~ ⑤ (생략)	제104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제2항부터 제5항까지</u>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u>제1항 각 호</u> , 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5항제2호의2·제4호의2·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하고, 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⑥ <u>제1항제6호 및 제2항부터</u> ----- ----- ----- ----- <u>제1항</u> <u>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u> ----- ----- ----- ----- ----- ----- ----- ----- -----.